

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[별표 4]

안전조업교육의 내용 및 시간(제14조제7항 관련)

교육과정	교육내용	교육시간
정기교육	질서유지 및 안전한 조업 등	연 1회(4시간)
특별교육	월선·피랍 대비 안전사항 등	연 1회(2시간)

비고

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 외의 선원에게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해야 한다.